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9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가. 원고는 대법원 2015. 2. 12.자 2014다229269, 2014다2292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B, C, D, E, F, G, H, I, J, K는 원고를 대위한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1가합120533, 2012가합3921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에 기하여 2015.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등과 그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원고의 주장

등기관은 원고의 채권자 [redacted]건설이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 촉탁을 받고 2005. 8. 30. 직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L 외 11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2015. 6. 2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경정등기를 마친 것의 실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5. 8. 30.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2005. 8. 30.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최초 건축개시

(1) B, C, D, E, F, G, H, I, J, K, M, L(이하 위 12명을 '최초 대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redacted]구 N 대 164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2. 8. 2. 자신들을 건축주로 하여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03. 9.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redacted]건설은 2002. 10. 14. [redacted]건설과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23.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redacted]건설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3. 19.경 부도를 냈고, 이에 [redacted]건설은 2003. 3. 20.경부터 2층 옹벽거푸집 조립을 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에 의한 공사재개 및 중단 등

(1)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과 함께 건축주 지위를 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수한 P, Q, R, S, T, U, V, W, X, E, G, I, J, M, Y, Z, AA, AB 등 당시 대지공유자들(이하 '2차 대지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3. 4.경 [redacted]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redacted]건설과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redacted]건설과 종래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금액과 같이 1,517,945,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redacted]건설은 2003. 4. 7.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골조 및 토목 공사를 전부 마치고 지붕공사도 80% 마쳤다.

(3) 원고는 2004. 9. 16. 2차 대지공유자들에게 2004. 12. 20.까지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토지 지분을 매수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2차 대지공유자들은 2005. 1. 10. [redacted]원건설 주식회사(이하 '[redacted]원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2억 8,330만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승원건설은 200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마) 2차 대지공유자들은 2007. 4. 24.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자신들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1) [redacted]건설은 2005. 8.경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1,517,945,000원을 지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35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8. 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최초 대지소유자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건축허가권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같다) 제7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제1항 본문, 제152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취득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인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 제10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①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② 건축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주었거나, ③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거나, ④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중 빠른 날이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등을 정하는 취득일이 되지만,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이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서 이행보조자인 원백건설을 통하여 골조 및 토목 공사를 전부 마치고 지붕공사도 80% 마친 2003. 7. 28.경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권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았고, 건축허가권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일부 말소등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정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원고 명의로 회복될 등기가 없는 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2015. 6. 26.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권능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 권능 중 어느 것도 향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이라는 담세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5. 6. 26.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이 된다.

라)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은 취득일인 2015. 6. 26.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5. 8. 25.까지이므로, 위 취득세 등 부과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5. 8. 26.부터 2020. 8. 25.까지 5년간이다. 피고는 위 제척기간 내인 2015. 9. 14.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고지서'라 한다)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정등기일인 2015. 6. 26.이 기재되어 있고,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목' 부분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각 취득세 등의 본세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각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납세고지서 '지방세 납부안내' 부분 중 '가산세'란에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사기 · 부당한 행위 40%),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사기 · 부당한 행위 40%), 납부불성실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지연일자 × 1만분의 3 (한도 100분의 75)'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 지방교육세 본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세고지서만으로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추상적으로 가산세액의 산정 공식이 설명되어 있을 뿐 각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취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인지 과소신고 가산세인지 여부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기 전에 따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1-1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41㎡

2.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1-10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71㎡

3.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2-2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41㎡

4.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2-20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7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5.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2-20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183.11㎡

6.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3-3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41㎡

7.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3-30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71㎡

8.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3-30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183.11㎡

9.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4-4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10.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4-40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71㎡

11.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4-40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183.11㎡

12.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5-5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41㎡

13.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5-50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71㎡

14.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5-50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183.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15.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6-6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41㎡

16.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6-60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71㎡

17.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6-7-60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38.98㎡(복층)

18. (1동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redacted]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번호 : 7-70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redacted]층 제[redacted]호 211.8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별지

처분 목록

(단위 : 원)

취득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의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8,192,290	1,825,230	468,130	10,670	585,160	13,340
같은 순번 2	8,204,410	1,830,400	468,820	10,820	586,020	13,530
같은 순번 3	8,192,290	1,825,230	468,130	10,670	585,160	13,340
같은 순번 4	8,204,410	1,827,940	468,820	10,680	586,020	13,360
같은 순번 5	7,095,780	1,580,930	405,470	9,240	506,840	11,550
같은 순번 6	8,192,290	1,825,230	468,130	10,670	585,160	13,340
같은 순번 7	8,204,410	1,827,940	468,820	10,680	586,020	13,360
같은 순번 8	7,095,780	1,580,930	405,470	9,240	506,840	11,550
같은 순번 9	8,192,290	1,825,230	468,130	10,670	585,160	13,340
같은 순번 10	8,204,410	1,827,940	468,820	10,680	586,020	13,360
같은 순번 11	7,095,780	1,580,930	405,470	9,240	506,840	11,550
같은 순번 12	8,192,290	1,825,230	468,130	10,670	585,160	13,340
같은 순번 13	8,204,410	1,827,940	468,820	10,680	586,020	13,360
같은 순번 14	7,095,780	1,580,930	405,470	9,240	506,840	11,550
같은 순번 15	8,192,290	1,825,230	468,130	10,670	585,160	13,340
같은 순번 16	8,204,410	1,827,940	468,820	10,680	586,020	13,360
같은 순번 17	9,261,110	2,063,370	529,200	12,060	661,500	15,080
같은 순번 18	8,595,540	1,915,070	491,170	11,190	613,960	13,99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6.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끝.